

## 2017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(해양수산서기보) 경력경쟁채용 공고

2017년도 제2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(해양수산서기보)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17년 7월 10일

관 세 청 장

###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

연번	임용분야	임용직급	인원	근무예정기관	주요업무
1	해양수산 (선박항해)	해양수산서기보 (선박항해직류)	4명	부산세관	감시정 운용, 항만 감시업무 등
2	해양수산 (선박기관)	해양수산서기보 (선박기관직류)	4명	"	"

### 2 법적 근거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 제2항 제2호
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 제1항 제2호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7조 및 제29조

### 3 채용자격 요건 (인정기준일 :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)

- 공통요건
 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고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  - \*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,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1999.12.31. 이전 출생자)

**< 결격사유 >**

-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※ 개정 민법이 시행(2013.7.1.)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형법 제303조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응시자격

채용분야	임용자격
해양수산 (항해기관)	<b>【 선박항해직류 】</b> 항해사(1~6급) 자격증 소지자 <b>【 선박기관직류 】</b> 기관사(1~6급) 자격증 소지자

\*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자 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

## 4 신분 및 보수수준

- 『국가공무원법』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
- 보수는 『공무원보수규정』, 『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 등 관련규정 적용

## 5 시험 방법

### 가. 1·2차 시험(병행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

- 시험과목
  - 공통과목(2) : 물리, 관세법개론(제2장 제4절, 제3장, 제4장, 제5장 제외)
  - 전공과목(1) : 항해(선박항해직류에 한함), 선박기관(선박기관직류에 한함)
- 직류별 필기시험과목·점수 : 각 직류별 75문항, 300점 만점

구분		시험과목	문항수	배 점	점 수	비 고
공통과목 (1차 시험)		물 리	25	4	100	객관식
		관세법개론	25	4	100	
전공과목 (2차 시험)	항해직류	항 해	25	4	100	선택형 (4지)
	기관직류	선박기관	25	4	100	

- 출제범위 및 난이도
  - 관세법 : 현행 관세법 전문(제2장 제4절, 제3장, 제4장, 제5장 제외)
  - 전공과목 : 「선박직원법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·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시험에 준함
  - 난이도 :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준함
- 합격자 결정
  - 과목당 4할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.5 배수 범위 내에 포함된 자를 합격자로 결정

### 나. 3차 시험 : 서류전형

-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가능
-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### 다. 4차 시험 : 면접시험

- 3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『공무원임용시험령』 제5조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, 중,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'상', '중', '하'로 평정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('상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)
- ※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(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)

▶ 불합격 기준

-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'하' 평정
-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 평정

## 6 시험 일정

구분	원서접수 및 취소기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1·2차 시험 (필기시험)	'17.7.10(월)~7.21(금) (취소마감 7.26. 18:00)	'17.7.28(금)	'17.8.26(토)	'17.9.1(금)
3차 시험 (서류전형)				'17.9.7(화)
4차 시험 (면접시험)		'17.9.1(금)	'17.9.14(목)	'17.9.19(화)

\* 공고방법 :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customs.go.kr>) 게재

## 7 응시원서 접수

### 가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

- 2017. 7. 18(화) ~ 7. 21(금) 18:00
-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(다만, 마감일은 18:00까지)

### 나. 응시원서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만 가능

-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(<https://ctc.customs.go.kr>) → 시험정보 → 응시원서 접수 → “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” 선택
- 응시원서용 사진 : 해상도 100 이상, 규격 3.5cm×4.5cm, 파일형식 JPG,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(한글 형식 저장 시 오류 가능)

## 다. 응시수수료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5조(응시수수료)에 따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
- 응시수수료(5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(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됨
-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(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명서 제출 후 반환조치)
-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

## 8 가산특전

### 가.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○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\* 판단 기준일자 : 필기시험예정일

### 나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
-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/5%/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%)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#### 다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
  -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는 가산비율(10%/5%/3%)과 보훈번호(또는 증서번호) 입력
  - 자격증의 종류(가산비율) 및 번호(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)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
-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,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

## 9 유의사항

- 『공무원임용시험령』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,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시키기 바라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,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,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(☎ 042-481-7673), 관세국경관리연수원(☎ 041-410-851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